

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 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 기 대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재 지하철, 도로, 하수도 등 공사시 원인자로 발생하는 지장 상수도관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원인자가 이설하고 있으며, 원인자가 상수도 분야 경험이 미흡할 경우 시공중 누수, 수질사고, 수도관 방치, 세척불량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공사시 발생하는 지장 상수도관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설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함으로써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정급수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  
제3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의 제2항 제10호를 신설하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시설물 이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 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